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025호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2차) 공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7. 22.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2.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77개소

○ 선정방법 : 평가항목 합계 80점 이상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사 평가항목 총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도 심사단 구성, 심의)

3. 참여 기본요건

○ **인천광역시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1)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 행정처분(처벌절차)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2) 신청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또는 A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3) 신청일 현재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4)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60% 이상을 유지하고, 평균 현원이 10명 이상인 어린이집

5)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고, 타 시설을 설치·운영·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원장 변경 금지)

6) 신청일 현재 맞벌이 가정 현원이 30% 이상인 어린이집

7)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이 총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어린이집

8)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9) 신청일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충실히 수행한 어린이집

10)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11) 만 1세반 탄력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

12) 신청일 현재 인천형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거나 2021. 10. 15.(금) 이내에 인천형 영아반 편성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인천형 영아반 : 0세반 2명 이하 2개 반 이상 또는 0세반 2명 이하 1개 반과 1세반 4명 이하 1개 반으로 2개 반 이상 운영

※ 인천형 영아반은 혼합반과 2세반은 대상이 아니며, 돌봄비율을 낮춘 0세반은 의무적으로 1개 반 이상 편성하여야 함.

13) 어린이집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증빙서류와 운영비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 2021. 8. 9까지(시스템상 확인)

14)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15) 선정 요건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점 이상(가·감점 포함)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16) 동점일 경우 1순위 인천형어린이집이 적은 군·구 소재 어린이집(비율),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 3순위 보육교사 근속률, 4순위 맞벌이 가정 자녀 재원율, 5순위 기타 정책참여도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순으로 결정

※ 5순위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심사에서 결정

17) 평가항목 및 세부 선정기준은 「붙임1」, 「붙임2」 참조

4. 제외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정원 40인이상 민간, 직장, 협동어린이집

2) 신청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 중 어린이집

3)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이전 1년 이내 행정처분(처벌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중인 어린이집

〈 행 정 처 분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⑥~⑦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⑧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⑩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와 무관함
※ 행정처분에 그밖에 사항 적용은 2021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준용

4)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혐의가 확인된 경우

5)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6)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최근 3년간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최근 3년간 회계 관련, 급식기준 위반,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제외

※ 보육료 부정수급(유용) 관련 처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제4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는 제외

5.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 7. 22.(목) ~ 8. 9.(월) 근무시간 내

○ 신청・접수처 :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의 보육업무 담당부서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1)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①~④) 및 각 증빙자료 (제출자료) 각 1부

2) 인천형 어린이집 자체 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관련 이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6) 기타 증빙자료

7. 세부선정 기준 : 2021년도 인천형어린이집 선정기준(붙임1, 붙임2)

※ 선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준용

8. 선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및 선정 요건 확인	⇒	선정 추천	⇒	2차심사 및 선정
(시)		(어린이집 → 군·구)		(군·구)		(군·구→시)		(시)

9.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별도 선정 심사단을 구성 선정

○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평가항목 선정기준에 의거 총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차 심사 : 2021. 8. 26.(목) ~ 9. 17.(금)

○ 선정결과 : 2021. 9. 23.(목) 예정

- 군·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 인천시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 심사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 선정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21.10. 1. ~ '24. 9.30.)

※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선정 이후 6개월이내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없음

11. 지원(운영) 조건

○ 지원기준 :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2개 반 이상 낮춤.

- **0세반은 1:3→1:2, 1세반은 1:5→1:4, 혼합반은 대상 아님**
- **0세반 2개반 이상** 또는 **0세반 1개반과 1세반 1개반으로 2개반 이상 편성** 하여야 하며, **반드시 0세반 1개반을 포함**하여야 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반 담임교사는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도록 함 (단, 학기초 3월~5월 3개월간 **인천형반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담임겸임 제한적 허용)
- 기타반 중 1세반, 1~2세 혼합반 혹은 탄력반을 편성할 수 없음

12. 지원내용

○ 영아반 운영비(인건비) 지원

인천형 영아반	지원액	비고
0세반 2개반	월 2,456천원	2021년도 기준
0세반 1개반, 1세반 1개반	월 2,184천원	〃

○ 환경개선비 지원 : 1회 (개소당 4백만원)

※ 단, 최초 선정 1회에 한함. (2021년 10월중 지급예정이나 확정물량에 따라 2022년 1월중에 지급될 수도 있음)
선정 후 1년 이내 선정포기 및 취소처분 시 회수될 수 있음

13. 지정취소

○ 지정취소 요건

- 선정된 이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을 위반한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개선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한 경우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를 위반한 경우 중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 수납하여 3회 이상 적발 된 경우
- 영유아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된 경우(군·구 전담부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판단에 의함)
- 어린이집 내 급식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어린이집 소재지 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 다수 민원 제기 등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와 군・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간 중 원장이 변경된 경우

14.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포기와 제재규정

○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선정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없음**.

○ **선정 6개월 이후**에 인천형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청서를 해당 군・구에 제출하면 포기 신청을 즉시 수리하고 시에 공문 통보

○ 포기는 포기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3년간 인천형 어린이집을 다시 신청 할 수 없음

15. 기 타

○ 인천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추진 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 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의 수정 또는 열람은 허용하지 않음

○ 그 밖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참고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의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440-2893)로 문의 가능

◆ 중구(760-7923), 동구(770-6837) 미추홀구(880-4283), 연수구(749-7761) 남동구(453-6045), 부평구(509-6518), 계양구(450-6743), 서구(560-3435), 강화군(930-3589), 옹진군(899-2333)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명	구분	비고
1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보육교직원 현황	구비서류①	
3	보육아동 및 맞벌이 가정 현황	구비서류②	
4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	구비서류③	
5	취약보육 운영여부 등	구비서류④	
6	인천형 어린이집 자체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8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관련 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1.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평가항목 1부.
2.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1부.
3.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1부.
4. 2021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 관련 제출서식 1부. 끝.